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7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조지연·고동진·김형동

박덕흠 · 조배숙 · 강대식

박준태 • 엄태영 • 김은혜

김정재 • 우재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

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시설
-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장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적시설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 8.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용도 제한의 절차·방법, 제한 기간 및 안전기준 등 토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 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 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 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 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 (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 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다음 각 호의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 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 설비의 설치 및 행위-----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 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

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체육시설
-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장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야적시설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물류시설
- 8.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용
	도 제한의 절차ㆍ방법, 제한 기
	간 및 안전기준 등 토지 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